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및 제1조)
-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근거 마련(안 제10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 및 제13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 기준 신설(안 제19조)
- 지정게시대 선정기준 및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20조)
- 전자게시대의 포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옥외광고업” 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 과 일치하도록 정비
(안 제24조, 안 제25조, 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15호 서식)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2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임기는 상위법에 따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 기준, 선정기준,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1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오납 및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서울시 표준안과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30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로 변경 (안 제명 및 제1조)
- 나.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근거 마련(안 제10조)
-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 기준 신설(안 제19조)
- 마. 지정게시대 선정기준 및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20조)
- 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사. “옥외광고업”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과 일치하도록 정비 (안 제24조, 안 제25조,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 아.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10.26. ~ 11.6. / 11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 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 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을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후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그 밖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

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관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야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관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 기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2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광고물 등 | 이행강제금 |
|---------------------|--------------------------------|
| 가.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 |
| 1) 면적 5㎡ 미만 | |
| - 2.0㎡ 이하 | 20만원 |
| - 2.1㎡ 이상 3.0㎡ 이하 | 30만원 |
| - 3.1㎡ 이상 4.0㎡ 이하 | 40만원 |
| - 4.1㎡ 이상 5.0㎡ 미만 | 49만원 |
|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5.0㎡ 이상 6.0㎡ 이하 | 59만원 |
| - 6.1㎡ 이상 7.0㎡ 이하 | 69만원 |
| - 7.1㎡ 이상 8.0㎡ 이하 | 79만원 |
| - 8.1㎡ 이상 9.0㎡ 이하 | 89만원 |
| - 9.1㎡ 이상 10.0㎡ 미만 | 99만원 |
|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
| - 10.0㎡ 이상 12.0㎡ 이하 | 119만원 |
| - 12.1㎡ 이상 14.0㎡ 이하 | 139만원 |
| - 14.1㎡ 이상 16.0㎡ 이하 | 159만원 |
| - 16.1㎡ 이상 18.0㎡ 이하 | 179만원 |
| - 18.1㎡ 이상 20.0㎡ 미만 | 199만원 |
| 4) 면적 20㎡ 이상 |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 |
| |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나. 돌출간판 | |
| 1) 연면적 5㎡ 미만 | |
| - 2.0㎡ 이하 | 20만원 |
| - 2.1㎡ 이상 3.0㎡ 이하 | 30만원 |
| - 3.1㎡ 이상 4.0㎡ 이하 | 40만원 |
| - 4.1㎡ 이상 5.0㎡ 미만 | 49만원 |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5.0㎡ 이상 6.0㎡ 이하 | 59만원 |
| - 6.1㎡ 이상 7.0㎡ 이하 | 69만원 |
| - 7.1㎡ 이상 8.0㎡ 이하 | 79만원 |

| | |
|--|---|
| - 8.1㎡ 이상 9.0㎡ 이하 | 89만원 |
| - 9.1㎡ 이상 10.0㎡ 미만 | 99만원 |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
| - 10.0㎡ 이상 12.0㎡ 이하 | 119만원 |
| - 12.1㎡ 이상 14.0㎡ 이하 | 139만원 |
| - 14.1㎡ 이상 16.0㎡ 이하 | 159만원 |
| - 16.1㎡ 이상 18.0㎡ 이하 | 179만원 |
| - 18.1㎡ 이상 20.0㎡ 미만 | 199만원 |
| 4) 연면적 20㎡ 이상 |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
| 1) 연면적 3㎡ 미만 | |
| - 0.5㎡ 이하 | 30만원 |
| - 0.6㎡ 이상 1.0㎡ 이하 | 35만원 |
| - 1.1㎡ 이상 2.0㎡ 이하 | 40만원 |
| - 2.1㎡ 이상 3.0㎡ 미만 | 49만원 |
|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
| - 3.0㎡ 이상 3.5㎡ 이하 | 59만원 |
| - 3.6㎡ 이상 4.0㎡ 이하 | 69만원 |
| - 4.1㎡ 이상 4.5㎡ 이하 | 85만원 |
| - 4.6㎡ 이상 5.0㎡ 미만 | 99만원 |
|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5.0㎡ 이상 6.0㎡ 이하 | 119만원 |
| - 6.1㎡ 이상 7.0㎡ 이하 | 139만원 |
| - 7.1㎡ 이상 8.0㎡ 이하 | 159만원 |
| - 8.1㎡ 이상 9.0㎡ 이하 | 179만원 |
| - 9.1㎡ 이상 10.0㎡ 미만 | 199만원 |
| 4) 연면적 10㎡ 이상 |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 |

| | |
|----------------------|---|
| 1) 연면적 5㎡ 미만 | |
| - 2.0㎡ 이하 | 30만원 |
| - 2.1㎡ 이상 3.0㎡ 이하 | 35만원 |
| - 3.1㎡ 이상 4.0㎡ 이하 | 40만원 |
| - 4.1㎡ 이상 5.0㎡ 미만 | 49만원 |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5.0㎡ 이상 6.0㎡ 이하 | 59만원 |
| - 6.1㎡ 이상 7.0㎡ 이하 | 69만원 |
| - 7.1㎡ 이상 8.0㎡ 이하 | 79만원 |
| - 8.1㎡ 이상 9.0㎡ 이하 | 89만원 |
| - 9.1㎡ 이상 10.0㎡ 미만 | 99만원 |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
| - 10.1㎡ 이상 12.0㎡ 이하 | 119만원 |
| - 12.1㎡ 이상 14.0㎡ 이하 | 139만원 |
| - 14.1㎡ 이상 16.0㎡ 이하 | 159만원 |
| - 16.1㎡ 이상 18.0㎡ 이하 | 179만원 |
| - 18.1㎡ 이상 20.0㎡ 미만 | 199만원 |
|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
| - 20.0㎡ 이상 25.0㎡ 이하 | 219만원 |
| - 21.1㎡ 이상 30.0㎡ 이하 | 239만원 |
| - 30.1㎡ 이상 35.0㎡ 이하 | 249만원 |
| - 35.1㎡ 이상 40.0㎡ 이하 | 269만원 |
| - 40.1㎡ 이상 45.0㎡ 이하 | 289만원 |
| - 45.1㎡ 이상 50.0㎡ 미만 | 299만원 |
| 5) 연면적 50㎡ 이상 |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 |
|---------------------|---|
|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
| - 연면적 5㎡ 이하 | 40만원 |
|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50만원 |
|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60만원 |
|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70만원 |
| - 연면적 21㎡ 이상 | 8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00만원

2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 | |
|--------------------|--|
| 가) 연면적 3㎡ 미만 | |
| - 1.0㎡ 이하 | 10만원 |
| - 1.1㎡ 이상 2.0㎡ 이하 | 20만원 |
| - 2.1㎡ 이상 3.0㎡ 미만 | 29만원 |
|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
| - 3.0㎡ 이상 4.0㎡ 이하 | 39만원 |
| - 4.1㎡ 이상 5.0㎡ 미만 | 49만원 |
| 다) 연면적 5㎡ 이상 |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 종 류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교육 대상 및 방법 | 비 고 |
|--------------|-------|---|--|-----------------|
| 신규 교육 | 6시간 |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
| 보수교육 | 3시간 |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재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법·령·조례 제개정 시 |
|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 3시간 |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 |
| 기타교육 | 따로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 |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 광고물 등 | 수수료 |
|----------------------------|--------------|
| 가. 벽면 이용 간판 | |
| 1) 자사 광고 | |
| - 면적 5㎡ 이하 | 4,000원 |
|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원 |
| | |
| 2) 타사 광고 | |
| - 면적 5㎡ 이하 | 40,000원 |
|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 |
| 나. 삭 제 | |
| 다. 돌출간판 | |
| - 면적 1㎡ 이하 | 10,000원 |
| - 연면적 6㎡ 이하 | 20,000원 |
|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 10,000원 |
| 등(개당) | |
| 라.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마. 옥상간판 | |
| - 연면적 10㎡ 이하 | 40,000원 |
|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6,000원 |

| | |
|---|--------------|
| 바. 지주 이용 간판 | |
| - 연면적 10m ² 이하 | 20,000원 |
| - 연면적 1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사. 애드벌룬 | |
|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20,000원 |
|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
|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 연면적 1m ² 이하 | 3,000원 |
| - 연면적 1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
|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 13,000원 |
|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
|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
| - 비행선 | 400,000원 |
|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 10,000원 |
|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2,000원 |
|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5,000원 |
|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
|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5,000원 |
|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파. 현수막 | |
| 1) 현수막 | |
| - 10m ² 이하 | 6,000원 |
| - 1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 1,500원 |

| | |
|--|----------------------|
| 2) 현수막 게시시설 | |
| - 10m ² 이하 | 10,000원 |
| - 1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하. 벽보(1건:20매) | 5,000원 |
| 거. 전단(1건:500매) | 5,000원 |
| 너. 전자게시대(1건) | 6,000원 |
| 더. 광고물 등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 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적용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수수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 등 | 적용기준 | 수수료 |
|---|--|------------------------------|
|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2,000원 45,000원 3,000원 |
| 나. 돌출간판 |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5,000원 22,000원 3,000원 |
| 다. 옥상간판 |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2,000원 45,000원 3,000원 |
|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5,000원 22,000원 1,500원 |
|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 사. 현수막 게시시설 | - 연면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 연면적 80㎡ 초과 시 1㎡당 더하 는 금액 | 22,000원 45,000원 2,000원 |
|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15,000원 | |
|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7,500원 | |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p>법 제20조 제1항제1호</p> | <p>14만원</p> <p>24만원</p> <p>34만원</p> <p>44만원</p> <p>54만원</p> <p>64만원</p> <p>85만원</p> <p>11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10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9만원</p> <p>39만원</p> |

| | |
|---|--|
| - 1.7㎡ 이상 2.0㎡ 미만 | 49만원 |
|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
| - 2.0㎡ 이상 2.3㎡ 이하 | 59만원 |
| - 2.4㎡ 이상 2.6㎡ 이하 | 69만원 |
| - 2.7㎡ 이상 3.0㎡ 미만 | 79만원 |
| 라) 연면적 3㎡ 이상 |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나. 현수막 | |
|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면적 3㎡ 미만 | |
| - 1.0㎡ 이하 | 10만원 |
| - 1.1㎡ 이상 2.0㎡ 이하 | 12만원 |
| - 2.1㎡ 이상 3.0㎡ 미만 | 14만원 |
|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
| - 3.0㎡ 이상 3.7㎡ 이하 | 24만원 |
| - 3.8㎡ 이상 4.4㎡ 이하 | 28만원 |
| - 4.5㎡ 이상 5.0㎡ 미만 | 34만원 |
|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5.0㎡ 이상 6.0㎡ 이하 | 59만원 |
| - 6.1㎡ 이상 8.0㎡ 이하 | 69만원 |
| - 8.1㎡ 이상 10.0㎡ 미만 | 79만원 |
| 라) 면적 10㎡ 이상 |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 다. 벽보 | |
| 1) 일반 광고내용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25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35천원 |
| - 21장 이상 | 장당 45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30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40천원 |

| | | |
|---|---------------|---------|
| - 21장 이상 | | 장당 50천원 |
| 라. 전단 | | |
| 1) 일반 광고내용 |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 장당 18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 장당 27천원 |
| - 21장 이상 | | 장당 35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 장당 30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 장당 40천원 |
| - 21장 이상 | | 장당 50천원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20조제1항 제2호 | |
|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 | 67만원 |
|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 | 117만원 |
|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 | 217만원 |
| 라. 1년 이상 | | 400만원 |
| 3. 삭 제 | | |
|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5호 | |
|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 | 80만원 |
|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 | 200만원 |
|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500만원 |

| | | |
|---------------------------------------|---------------|-------|
|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 |
| 가. 1회 위반한 경우 | | 25만원 |
|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 | 45만원 |
|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 100만원 |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 ① 번 호 |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 | | | | | 광고물 등의 내용 | | | | | | | 관리자 | | | ⑱ 변 경 사 항 | ⑲ 비 고 |
|-----------------|-----------------|-----------------------|------------------|-----------------------|-------------|----------------------|-------------|-------------|-------------|-----------------------|-----------------------|-----------------------|-----------------------|-------------|-------------|-----------------------|-----------------------|-------------|
| | ② 성 명 | ③ 생 년 월 일 | ④ 업 소 명 | ⑤ 전 화 번 호 | ⑥ 주 소 | ⑦ 옥외광고사업자 등록번호 | ⑧ 종 류 | ⑨ 수 량 | ⑩ 규 격 | ⑪ 표 시 위 치 | ⑫ 표 시 기 간 | ⑬ 광 고 내 용 | ⑭ 준 공 일 자 | ⑮ 성 명 | ⑯ 주 소 | ⑰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 | | |
|---------|----------|------|
| 제 호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소명(단체명) | |
| | 주소 | |
| 영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 | | 영등포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 | | |
|---------|--|------|
| 제 호 | | |
| 수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소명(단체명) | |
| | 주소 | |
| 영업장 소재지 |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 규격 | 가로 6cm x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 | 검정색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영 등 포 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20)

「옥외광고물 등의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소명 | 전화번호 |
| | 주소 |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
|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 | 광고물 등의 종류 |
| 표시위치 또는 장소 | | 광고물 등의 규격 |
| 신청일자 | | 검사일자 |
| 점검내용 | | |
| 점검의견 | | |
|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항목 | | 검사내용 및 기준 | 검사결과 |
|---|------|---|------|
| 기본사항 |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 법 규 |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
| 사용자재 | |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 |
| | |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 |
| 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
|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 |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
|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 | | |
| 통행 |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
| 기타 |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 ① 신청 번호 | ② 신청 일자 | 신청자 | | |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 ⑦ 광고물 등의 종류 |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 ⑩ 검 사 일 자 | ⑪ 검 사 구 분 | ⑫ 검 사 결 과 | 검사자 | | | ⑯ 비 고 |
|---------------|---------------|-------------|------------------|-------------|---|----------------------|---------------------------|--------------------------|-----------------------|-----------------------|-----------------------|-------------|-------------|-------------|-------------|
| | | ③ 성 명 | ④ 업 소 명 | ⑤ 주 소 | | | | | | | | ⑬ 소 속 | ⑭ 직 명 | ⑮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 ① 일련 번호 | ② 광고물 종 류 | ③ 표 시 내 용 | ④ 수 량 | ⑤ 보 관 연월일 | ⑥ 보 관 장 소 | ⑦ 위반장소 ·위치 | ⑧ 담 당 (취급)자 | ⑨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 | |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광고물 등 종류 | | 수량 |
| 광고내용 | | |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 | | |
|----------|----|------|
| 인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광고물 등 종류 | | 수량 |
| 광고내용 | | |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 제 호 | |
|---------|--------|
| 교육 과정명 | |
| 교육 수료일자 | |
| 수강자 | 성명 |
| | 소속 업소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 ① 번 호 | ② 교 육 과정명 | ③ 교 육 수료일자 | ④ 소 속 업소명 | ⑤ 성 명 | ⑥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 제 호 | | |
|------|-----|--------|
| 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소명 | 영업장소재지 |
| | 주소 | |
| 교육계획 | 일시 | |
| | 장소 | |
| 불참사유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 | | | |
|--------|----------|------|----------|
| 제 | 호 |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업소명(단체명) | | |
| | 주소 | | |
| 영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
| | | 영등포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 제 호 | | |
|--------|--------------------------------|------|
| 수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소명(단체명) | |
| | 주소 | |
| 영업장소재지 | | |
| 위탁기간 |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